

접수번호		M291-26-	검사자	안전현 (서명)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2부. 그네		결과치 "-": 해당없음
일반		그네는 이 규격에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		☐ 합 ☐ 불 ☐ -
지면간격		정지된 상태에서 지면간격은 350 mm 이상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벨트형 좌석과 같이 사용자 탑승 시 지면간격이 변화되는 경우, 폭 260 mm, 50 kg의 하중을 가하여 측정했을 때, 지면간격은 350 mm 이상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다중사용자용 좌석의 지면간격은 400 mm 이상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하부가 유연한 다중사용자용 좌석의 지면간격은 가장 극단적인 위치에서 좌석의 단단한 부분에서 측정하며, 400 mm 이상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1,2,3형의 그네가 타이어좌석일 경우, 지면간격은 정지상태에서 400 mm 이상일 것. 타이어좌석이 수직으로 설치된 연결그네의 경우 지면간격은 100 mm 이상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제3형 그네의 좌석간격		제3형 그네, 매달림이 고정된 보 방향을 제외하고 최소 좌석 간격은 400 mm 이상일 것. 그네가 사용하는동안 보와 좌석측면이 접촉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, 접촉하는 면에 보호물질을 이용하여 기둥의 손상을 방지할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그네 좌석의 최소 간격과 안정성	그네 좌석사이의 최소공간	(일반좌석)그네가 정지된 상태에서, 좌석 측면과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최소 수평범위 c는 $\geq 20\% \times$ 매달림 구성체 길이 + 200 mm 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(다중사용자용 좌석)그네가 정지된 상태에서, 좌석 측면과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최소 수평범위 c는 $\geq 20\% \times$ 매달림 구성체 길이 + 400 mm 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그네가 정지된 상태에서, 좌석간의 최소 수평범위 s는 $\geq 20\% \times$ 매달림 구성체 길이 + 300 mm 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벨트형 좌석과 같이 사용 중 폭이 줄어드는 유연한 좌석의 고정부 사이의 거리 G는 400 mm 이상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제4형그네에서 좌석이 90° 각도를 이뤘을 시 좌면과 중심축 사이 최소거리는 400 mm 이상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그네 좌석의 안정성	매달림 구성체들 사이의 거리(F) : 'F $\geq$ G + 5 % $\times$ 매달림 구성체 길이' 이상일 것. (G :		

(/)

